

외부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세칙

제정 2010. 9. 17. 세칙 제22호
개정 2011. 1. 17. 세칙 제24호
개정 2011. 9. 1. 세칙 제33호
[시행 2012.10.31.] [규정 제143호, 2012.10.31., 일부개정]
[시행 2013.3.29.] [세칙 제50호, 2013.3.29., 일부개정]
[시행 2014.1.7.] [세칙 제59호, 2013.12.31., 일부개정]
[시행 2014.10.29.] [세칙 제62호, 2014.10.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신설 2013.3.29>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자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라 외부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9, 2013.12.31>

1. “외부위탁운용”이란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 외부위탁기관에게 투자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여 운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재단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외부위탁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하고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이하 “위탁운용사”라 한다)를 말한다.
3. “위탁운용자산”이란 재단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중전 제3조는 제20조의2로 이동 <2013.3.29>]

제4조

[중전 제4조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13.3.29>]

제2장 운용사선정위원회 <신설 2013.3.29>

제5조(운용사선정위원회의 설치) 위탁운용사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용사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3.29, 2013.12.31>

1. 위탁운용사 평가·선정

2. 위탁운용사와의 계약 해지 및 위탁운용사 변경
3. 그 밖에 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탁운용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재단 직원과 자산운용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9, 2013.12.31>

③ 외부위원은 사전에 구성된 관련분야 전문가단(Pool)에서 위촉하되, 대외보안 및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비공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④ 위원회 구성 중 외부위원의 비율은 과반수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3.29>

1. 금품·향응의 제공 또는 수수, 청탁 등 부패행위 관련 전력이 있거나 평가 중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람
2. 경력, 학력 또는 부패행위 관련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제8조(외부위원 자격) 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9, 2013.12.31>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8조에 의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 자산운용평가 및 운용사평가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경제, 경영 및 금융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련 분야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외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2013.12.31>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3.3.29>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관련 용역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

여한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제 <2013.3.29>

③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9>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⑤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9, 2013.12.31>

제10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3.29>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대리참석) 외부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9>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9, 2013.12.31>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29>

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3.12.31]

제14조(서면회의) 선정위원회는 대면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서면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 위원들에게 통지하되 2회 연속은 제한한다.

제15조(선정위원회 운영 공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 때에는 그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개최일 3일 전까지 최종선정후보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전송, 전자우편 발송 등을 말한다)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9>

제16조(의견청취) 선정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당사자, 관계 직원, 관계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9>

제17조(간사) ① 선정위원회에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외부위탁운용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3.29, 2013.12.31>

③ 삭제 <2013.12.31>

제18조(회의록) ① 선정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3.3.29, 2013.12.31>

1. 개최, 회의의 중지, 산회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4. 회의경과의 요지와 그 결과

5. 그 밖에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외부위탁운용 업무 담당 부서에서 이를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2013.12.31>

제19조(회의록 공개 및 통지) ① 선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결재를 받은 후 이를 14일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2013.12.31>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회의록에 결재한 후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9>

제20조(수당 등)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재단의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선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위탁운용사 선정 <신설 2013.3.29>

제20조의2(선정시기) 위탁운용사는 연간 투자계획에 따라 연 1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제3조에서 이동 <2013.3.29>]

제20조의3(선정절차) ① 위탁운용사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3.3.29, 2013.12.31>

1. 경영안전성
2. 운용조직 및 인력
3.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
4. 위험관리체계
5. 운용실적
6. 그 밖에 위탁운용사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운용사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13.3.29, 2013.12.31>

1. 1차 심사: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최종 선정할 위탁운용사 수의 2배수 이내에서 평점 상위 순으로 선정함

2. 2차 심사: 1차 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심사함

가. 현장점검: 제안서 내용 및 1차 심사 시 평가한 내용을 현장과 대조 확인하여 상이한 정도에 따라 감점함

나. 구술심사: 질의·응답을 통해 정성적으로 평가함

③ 위탁운용사 최종 선정은 2차 심사 평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점인 경우에는 2차 심사 기술능력 평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3.3.29., 2014.10.29>

④ 위탁운용사의 운용시작일로부터 종료예정일 2개월 전까지의 누적수익률이 외부위탁운용 업무 담당 부서장이 정하는 기준수익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자산의 회수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2.31>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최종 선정 결과는 이사장 및 자산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⑥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선정 결정 후에도 위탁운용사 선정을 취소하고 위탁운용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3.3.29, 2013.12.31>

1. 선정된 위탁운용사의 제안서 등 서류나 구술 내용에 허위 또는 중대한 사실 은폐가 있는 경우

2. 선정에 있어서 중대한 착오 등이 있는 경우
3.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사가 위탁운영자산의 회수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4조에서 이동 <2013.3.29>]

제4장 위탁운영사 관리 <신설 2013.3.29>

제21조(위탁운영사별 자금배분원칙과 위탁운영수수료) ① 외부위탁운영 업무 담당 부서장은 위탁운영자산에 대해 안정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감안하여 위탁운영자산 배분계획을 수립하되, 위탁운영사별로 가급적 분산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2013.12.31>

② 삭제 <2013.3.29>

③ 재단은 기본수수료 이외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성과수수료를 위탁운영사에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3.29]

제22조(위탁운영자산의 배정) ① 위탁운영자산은 제20조의3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영사의 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개정 2013.3.29, 2013.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사 교체대비 등을 고려하여 제20조의3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영사 중 하위순위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자산을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2013.12.31>

③ 제2항에 따라 차기 선정 시기까지 위탁운영자산을 배정 받지 못한 위탁운영사가 위탁운영자산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차기선정절차에 다시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2013.12.31>

[제목개정 2013.3.29, 2013.12.31]

제23조(위탁운영사의 평가) ① 외부위탁운영 업무 담당 부서는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별표 3의 위탁운영사평가기준에 따라 운용성과 및 계약준수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위탁운영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제24조(추가배정) ① 제23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증액투자대상에 포함된 위탁운영사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자산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추가배정 대상 위탁운영사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자산을 배정 받지 못한 위탁운영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사에 우선하여 위탁운영자산을 배정한다. <개정 2013.3.29, 2013.12.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용과정상 위법 부당한 운용, 운용지침의 위반 등으로 위탁운용 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운용사를 추가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제25조(위탁운용자산의 회수) ① 제23조에 따른 평가결과 자금회수대상에 포함되는 위탁운용사의 위탁운용자산은 차기 평가일 이전까지 회수한다. <개정 2013.3.29, 2013.12.31>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도 위험관리 또는 유동성 부족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운용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2013.12.31>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용자산을 회수하는 경우 그 회수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9, 2013.12.31>

1. 만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만기가 도래한 위탁운용자산을 먼저 회수함
2. 제1호에 따른 만기 도래 여부가 같으면 수익률이 낮은 위탁운용자산을 먼저 회수함
[제목개정 2013.12.31]

제26조(위탁운용 사항 점검) ① 외부위탁운용 업무 담당 부서는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 투자내역, 운용지침 준수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2013.12.31>

② 외부위탁운용 업무 담당 부서는 매월 말을 기준으로 운용성과를 확인하여,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위탁운용사에 대하여서는 별표 4의 수익률 저조 위탁운용사 관리기준에 따라 수익률제고방안을 제출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2013.12.31>

③ 제27조제1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운용지침 또는 운용관련 계약서 내용의 위반사실을 통보받거나, 위반사실을 자체적으로 발견한 경우에는 별표 5의 운용지침 위반시 관리기준에 따라 위탁운용자산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2013.12.31>

④ 그 밖에 위탁운용사의 경영안정성 악화, 운용전문인력 유출 등으로 운용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운용자산의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2013.12.31>

[제목개정 2013.3.29]

제27조(외부기관의 활용) ① 위탁운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운용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위탁운용사의 선정과 관련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② 재단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과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2013.12.31〉

제28조(판매회사 선정 협의) 외부위탁운용 업무 담당 부서는 위탁운용사의 판매회사 선정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9, 2013.12.31〉

1. 금융위원회에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하였을 것
2.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분의 150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3.3.29]

제29조(계약해지) ① 위탁운용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2013.12.31〉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재단에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2. 법령, 내규, 운용지침 또는 계약 등을 위반하여 거래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3. 위탁운용자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단의 명성 또는 안전성에 해를 끼치는 경우

4.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위탁운용자산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와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해지는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서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지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위탁운용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2.10.31, 2013.3.29〉

[제목개정 2013.3.29]

부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현재 투자되고 있는 연기금투자자에 대해서는 이 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이 세칙은 2011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이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42호, 2012.10.31>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을 위한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세칙 제50호, 2013.3.29>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세칙 제59호, 2013.12.31>

이 세칙은 2014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세칙 제62호, 2014.10.29>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3.3.29>

위탁운용사 1차 심사 기준(제20조의3제2항제1호 관련)

평가 항목	배점	세부평가 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내용
자본 건전성	10	실질자기자본 비율	5	최근 결산일 기준 (자기자본/총자산) 비율
				실질자기자본비율 %순위
		총자산수익률	5	최근 결산일 기준 (순이익/총자산) 비율
				총자산수익률 %순위
운용 신뢰도	20	해당유형 수탁고	10	해당유형 수탁고
				해당유형 수탁고 %순위
		운용인력수	5	해당유형 운용인력 수
				해당유형 운용인력수 %순위
		해당유형 운용경력	5	해당유형 운용경력
				해당유형 운용경력 %순위
운용성과	70	운용수익률	40	해당기간 수익률
				수익률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순위
		위험조정지표	30	해당기간 Tracking Error
				TE추적오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순위

* 운용성과 등은 외부전문기관 기초자료 활용가능

[별표 2] <개정 2013.3.29, 2014.10.29>

위탁운용사 2차 심사 기준(제20조의3제2항제2호 관련)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내용
기술 능력 평가	현장 방문 결과	-10 ~0	제안서 내용과 일치여부	-10 ~0	제안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 점수 감점
	경영 안전성	10	경영현황	10	소유구조 및 출자관계, 재무 및 경영상황 등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
	운용 전략의 적합성 및 실행 방안	30	운용철학	10	운용철학 과 운용스타일, 초과수익창출방법 및 목표수익률달성 방법 등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
			운용전략의 적합성	10	투자의사결정 전과정의 적정성 및 장단점, 종목선정 및 매입, 매도시의 의사결정과정 등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
			전략실행 방안	10	운용조직 및 인력구성, 운용방식(개인 또는 팀 Approach)의 특징, 사용중인 자산운용관련시스템의 특징 및 활용도, 효율적인 매매를 위한 세부전략 등,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
	리서치 역량	10	리서치 능력	10	내부 리서치조직 업무분장 및 경력현황, 업종 및 종목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방법 리서치와 운용의 상호연계 체계 등,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
	위험 관리 방안	20	리스크관리	10	리스크관리 담당조직의 업무분장 및 경력사항 내부규정화정도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실제 위험발생시 대응방안 등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
			컴플라이언스	10	컴플라이언스 담당조직의 업무분장 및 경력사항, 컴플라이언스 기능수행체계, 펀드매니저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및 수행체계, 운용과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방안 등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
	운용 전문 인력의 전문성 및 안정성	20	전문성	10	선정시 운용담당펀드매니저의 경력 및 실적, 담당펀드매니저 문책사항 등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
			안정성	10	담당펀드매니저 교체사유 발생 시 대응방안, 수탁고대비 운용인력의 여력 등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
입찰 가격 평가	제안 수수료	10	제안수수료	10	제안수수료 순위를 5개 등급으로 분류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

[별표 3] <개정 2013.12.31>

위탁운용사 평가기준(제23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운용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평가(평가대상 위탁운용사가 2개 이하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액대상: 운용시작일(재선정된 경우에는 재선정에 따른 운용시작일을 말한다) 이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분기별 수익률이 2분기 연속 기준수익률을 상회하는 경우 - 유지대상: 증액 또는 회수대상이 아닌 경우 - 회수대상: 운용시작일(재선정된 경우에는 재선정에 따른 운용시작일을 말한다) 이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기별 수익률이 2분기 연속 기준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 2) 누적수익률이 2분기 연속 기준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 · 상대평가(평가대상 위탁운용사가 3개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액대상: 운용시작일(재선정된 경우에는 재선정에 따른 운용시작일을 말한다) 이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다음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분기 연속 상대평가 1위를 하는 경우 2) 분기별 수익률이 2분기 연속 기준수익률을 상회하는 경우 - 유지대상: 증액 또는 회수대상이 아닌 경우 - 회수대상: 운용시작일(재선정된 경우에는 재선정에 따른 운용시작일을 말한다) 이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분기 연속 상대평가 최하위(기준수익률을 상회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2) 분기별 수익률이 2분기 연속 기준수익률을 하회한 경우 3) 누적수익률이 2분기 연속 기준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
지침 준수	감점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과정상 계약 및 운용지침의 위반에 대하여 중요성 정도에 따라 감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사항 위반: 각 사항별로 최대 3점 - 그 밖에 일반사항으로 감점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사항별로 최대 2점 *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의 구분은 별표 5의 운용지침 위반 시 관리기준에 따름
운용의 일관성	감점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방식별 운용스타일의 일관성 유지 여부를 측정하여 스타일 변화 시 중요성 정도에 따라 감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펀드매니저의 교체: 최대 3점.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교체는 제외한다. - 운용스타일의 급격한 변동 : 최대 3점 - 그 밖에 운용방식별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운용형태로 감점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2점

* 감점항목의 합이 10점이 넘는 경우 각각 한 단계 아래기준으로 재분류

[별표 4] <개정 2013.12.31>

수익률 저조 위탁운용사 관리기준(제26조제2항 관련)

조치 구분	단계별 조치 내용	
주의	해당 사유	월별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하회하거나 상대평가 최하위(기준수익률을 상회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기록한 경우
	조치 내용	모니터링 강화, 담당펀드매니저 인터뷰
경고	해당 사유	운용시작일(재선정된 경우에는 재선정에 따른 운용시작일을 말한다) 이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월별 수익률이 2개월 연속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준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 2) 상대평가 최하위(기준수익률을 상회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기록한 경우
	조치 내용	수익률제고방안 징구

[별표 5] <개정 2013.3.29>

운용지침 위반시 관리기준(제26조제3항 관련)

단계	조치 내용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지침(중요사항과 일반사항을 구분) 위반 시
	<p>조치 : ① 반기별 평가 시 감점 반영</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중요사항 위반 시는 담당펀드매니저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와 면담하고 사유서와 재발방지안 징구</p> <p style="padding-left: 20px;">③ 위탁운용자산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p>

※ 중요사항과 일반사항의 구분

구 분	지 침 항 목
중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제한대상 위반 • 종목별 투자한도 초과 • 매매회전을 기준위반 • 기타 중요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 • 편입비중 위반 • 파생상품 운용한도 초과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운용회의 임의 불참 • 보고자료 미제출 또는 1주일이상 지연제출 • 기타 지침 위반으로 감점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의 정책적 목적으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 수동적(Passive) 지침 위반의 경우

[별지서식] <개정 2013.3.29>

청 럽 서 약 서

위원회 명 :

본인은 위 안전심의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아울러 상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수주, 자문, 연구 등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했거나 이해당사자가 아니며,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의 관련 업체에 재직할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서 약 자 : (서명)

한국장학재단 운용사선정위원회 위원장 귀하